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37호
2.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3. 발의일자 : 2020. 7. 2.
4. 회부일자 : 2020. 7. 8.

Ⅱ.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전출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므로 동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청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함(안 제14조제2항)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황인구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1637호로 발의되어 2020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교육청의 출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상기의 조성재원 중 “교육청의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동 기금이 적립·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마치 동 재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으로 받은 금원인 출연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일반적으로 ‘출연’이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며,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¹⁾

또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19.7.)」에서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세출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금의 조성재원인 ‘출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재원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동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은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 및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재원을 의미하는 것인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교육청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불명확한 법적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546, 2020.8.24.).

1) 「법령입안 길잡이」(법제처, 2019. 7.) 182p.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